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가. 정진술 의원 발의

- 의안번호 : 2771
-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 (찬성의원 18명)
- 발 의 일 : 2021년 10월 14일
- 회 부 일 : 2021년 10월 20일

나. 이성배 의원 발의

- 의안번호 : 2852
- 발 의 자 : 이성배 의원 (찬성의원 28명)
- 발 의 일 : 2021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21년 10월 20일

다. 김재형 의원 발의

- 의안번호 : 2856
- 발 의 자 : 김재형 의원 (찬성의원 9명)
- 발 의 일 : 2021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21년 10월 20일

2. 제안이유

가. 정진술 의원 발의

-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이성배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청년관련 사업의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김재형 의원 발의

-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서울특별시 청년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진술 의원 발의

- 청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을 청년인재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안 제10조의2).

나. 이성배 의원 발의

- 청년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지급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11조제2항).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비용 지원 및 독립가구 형성을 위해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급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비용지원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지원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3항).

다. 김재형 의원 발의

- 시장은 청년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4. 참고사항

가. 정진술 의원 발의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 입법예고(2021. 10. 25. ~ 11. 1.) 결과 : 의견 없음.

나. 이성배 의원 발의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예고(2021. 10. 25. ~ 11. 1.) 결과 : 의견 없음.

다. 김재형 의원 발의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 입법예고(2021. 10. 25. ~ 11. 1.)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정진술 의원 발의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개정(2021.8.17)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고,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현 행	개 정 안
<p><u>제10조의2(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u></p> <p>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할 청년들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데이터베이스 담당 부서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에서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p> <p>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u>데이터베이스</u>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u>제10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u></p> <p>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p> <p>② <u>청년인재정보</u> 수집·관리 ----- ----- -----.</p> <p>③ ----- <u>청년인재</u> <u>정보의</u> 수집·관리 및 수집된 정보의 <u>보호</u> 등-----.</p>

- 개정된 「청년기본법」 제15조의2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일 2022.2.18.]

- 현행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의2는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할 청년들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9년부터 ‘서울청년인재’등록을 통해 서울시 11개 분야에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왔음.
 - ※ 서울시 위원회 11개 분야 : 복지, 경제, 여성가족, 주택도시계획, 문화관광, 건강, 환경, 안전, 행정기타, 교통건설, 세금재정분야
 - 현재 ‘서울청년인재’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만 19~39세 청년으로,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내 ‘미래인재 등록 신청’을 통해 활동희망분야를 선택하여 청년인재 풀에 기본정보와 경력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서울시는 해당 인재 풀에서 서울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음.

서울미래인재 모집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모집개요**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서울 거주 또는 서울 기반으로 활동 중인 만 19~39세 청년
등록절차	• 서울청년포털 접속 → 로그인(서울시 회원) → 미래인재 등록 신청
정보입력	• 필수 : 성명, 성별, 현재소속, 직위,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거주지역, 위원회 참석 가능일자, 활동희망분야, 학력 • 선택 : 학력, 자격증 및 면허, 주요경력, 수상경력 등 ※ 선택사항 부실 입력 시 추천 및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정보 입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
활동희망분야	• 건강, 경제, 교통건설, 문화관광, 복지, 세금재정, 안전, 여성가족, 주택도시 계획, 행정, 환경 등 11개 분야 중 활동을 희망하는 3개 분야를 선택

○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점검·보수 지속**

- 보다 효율적인 미래인재 정보 관리·활용을 위해 등록자 및 관리자 시스템 점검 및 개선 지속

○ 안 제10조의2는 이와 같은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개정에 맞춰 ‘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임.

- 용어 정비와 함께 시장에게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동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나. 이성배 의원 발의

-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지급,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비용 지원 및 이사 비용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급,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 등 청년관련 사업의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안 제13조제3항, 안 제14조제1항, 안 제15조제3항).
- 안 제14조제1항을 비롯한 동 개정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금융생활 지원,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주거안정, 생활 안정 등 다양한 청년 정책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기본법과 기본조례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제도와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체상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법령들 사이의 통일성과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청년 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서울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보다, 바우처 지급, 상담 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 등 각 사업 내용을 ‘기본 조례’에 규율하고 있어, 동 규정을 기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 등은 2022년 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조례 개정 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예산의 기본 원칙인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안전제출에 있어 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예산안 심사 시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와 연계한 검토 및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2022년도 예산사업 중 ‘청년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과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협의 대상사업으로, 사업 시행 전에 사전절차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하고, 또한 「2021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 사전 승인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래청년기획단은 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법·절차의 사업 수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2021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예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

① 청년의 역량강화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해 바우처 지급(안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 안 제11조제2항은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우처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제3항은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비용 등과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p> <p>①·② (생략)</p> <p><신설></p> <p>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하며, <u>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우처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u></p> <p>④ ----- 제2항 및 제3항----- ----- -----.</p>

- 제출된 2022년 예산안에는 본 개정안에 근거하여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음.

〈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100,000	(x-) 100,000	(x-) 100
사회보장적수혜금	(x-) 0	(x-) 0	(x-) 100,000	(x-) 100,000	(x-) 100

- 안 제11조제2항과 안 제13조제3항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바우처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지원한다는 측면과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해 청년의 전·월세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이사 관련 비용 바우처 지급을 통해 청년의 주거독립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 현행 기본 조례 동 조항에 이미 시장에게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노력 및 대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업의 지원 방안과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후속조치가 동반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바우처 제도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연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바우처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2020년 2월판)」 1)에 맞추어 '이용권2)' 등으로 순화하여 표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② 청년의 역량강화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해 바우처 지급(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하는 영테크 사업을 지원하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 ----- ----- ----- -----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 제출된 2022년 예산안에는 본 개정안에 근거하여 '청년의 건강한 재정 출발지원(영테크)'사업으로 16억원을 편성하였음.

1) 185페이지

2) 순화 이력

- 우리말 다듬기 자료집(2006)
- 복지 상품권 제도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9호(2013.3.8.) : '바우처'를 '상품권, 이용권'으로 순화
- 2014년 제2차 국어심의회 국어순화 분과 심의 확정(2014.3.12.) : '전자바우처'는 '전자이용권'으로 순화 (출처: 국립국어원 누리집)

〈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 지원(영테크)’사업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1,550,000	(x-) 1,550,000	(x-) 100
사무관리비	(x-) 0	(x-) 0	(x-) 550,000	(x-) 550,000	(x-) 100
기타보상금	(x-) 0	(x-) 0	(x-) 1,000,000	(x-) 1,000,000	(x-) 100

- 다만,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사전에 조례를 통한 근거 마련 또는 예산 편성 시 사전수요조사나 시범운영 등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 하기 위한 미래청년기획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③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안 제15조제3항)

- 안 제15조제3항은 시장에게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② (생략) <u><신 설></u>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 제출된 2022년 예산안에는 본 개정안에 근거하여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으로 153억원을 편성하였음.

〈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15,250,000	(x-) 15,250,000	(x-) 100
사무관리비	(x-) 0	(x-) 0	(x-) 250,000	(x-) 250,000	(x-) 100
기타보상금	(x-) 0	(x-) 0	(x-) 15,000,000	(x-) 15,000,000	(x-) 100

- 동 조례 제15조제1항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생활안정 지원 방안으로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에서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동 조례 제3조제1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에 해당하는 연령층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참여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 타 시도 역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19세 이상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 취업준비중인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음.

〈타 시도 대중교통요금 지원 사업〉

사업명	지역	지원 조건 및 내용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거주 만13~23세 청소년에게 반기별(1월,7월) 6만원 한도에서 본인 교통카드 사용액만큼 지역화폐로 지급
청년동행카드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15~34세)에게 매월 5만원 한도에서 본인 카드 결제 후 한도액만큼 차감
취업준비청년 교통비지원 사업	수원시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구직활동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15만원 상당 대중교통 전용카드 지급(3개월)) - 재학생, 휴학생, 취업자, 군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평택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평택시	- 평택시 거주 만19~34세 청년구직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30만원 대중교통 전용카드 지급) - 재학생, 휴학생, 취업자, 군인, 취업자, 사업자는 지원 제외

- 현행 조례에 따르면 39세의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재정여건상 지원 범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망될 뿐 아니라, 2022년 예산안에 따른 사업 계획은 24세의 청년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바,
- 오히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동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연령 중 현재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등 지원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연령을 위한 19세~24세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김용석 의원 공동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말 폐기가 된바 있으며, 2019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송이량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된 바 있으나,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나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만성적인 적자를 이유로 요금인상 관련 논의 시 재검토하기로 한 의견에 따라 현재 계류 중에 있는바, 이러한 조례와 본 개정 조례안 제15조제3항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다. 김재형 의원 발의

-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제정(2020.8.4.)·시행(2020.8.5.)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청년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청년의 날) (생략)	제22조의2(청년의 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시장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7조(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날)

-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현행 조례 제22조의2는 시장이 ‘청년이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으나, 청년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의2(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서울시는 2015년부터 매년 ‘서울청년주간’행사를 운영해왔고, 특히 2020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날 지정 이후, 2021년에는 처음으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음.

2021. 9. 6.(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9월 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I·SEOUL·U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청년정책반장	김 흥 천	2133-6575
청년정책팀장	양 성 민	2133-6577
담당자	김 지 율	2133-430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13쪽

서울시 서울 청년을 위한 특별한 한주...11~17일 '2021 서울청년주간'

- 9월 11일(토)~17일(금), 청년의 날 맞아 '2021 서울청년주간' 개최
- 11일 기념행사 및 서울청년시민회의 시작으로 마음건강 포럼, 박람회 등
- 코로나19 시대 청년 활력 제고 프로그램 및 청년 시정 참여의 장 마련
- 2021 서울청년주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서울청년생활' 비대면으로 진행

- 서울시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9월 11일(토)~17일(금) 일주일 간 「2021 서울청년주간」을 개최한다.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의 날과 서울청년주간을 계기로 자신을 돌보고 일상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행사 부제를 '나의 사랑을 일상해'로 설정했다.
-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시민이 실수로 단어 순서를 바꾸어 말한 것이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된 사례를 본 따 '나의 일상을 사랑해'를 '나의 사랑을 일상해'로 표현하였다.

□ 2021 서울청년주간에서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 ▲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 마음건강 포럼, ▲서울청년 방(에서 즐기는 박)람회 등 청년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년 시정 참여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공식 홈페이지(2021.서울청년주간.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 청년의 날 기념행사, 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 마음건강 포럼 등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유튜브 채널 '서울청년생활'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① 청년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날 기념행사"

- 서울시는 2021 서울청년주간 첫 날인 9월 11일(토) 14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지난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날 지정 이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기념행사이다.
-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 홍보대사 개그맨 장도연을 비롯해 가수 테이, 작가 겸 방송인 박정은, 서울시 청년정책 유튜브 콘텐츠 '서울청년정책.zip'에 출연 중인 개그맨 이재윤 전수희 등이 청년의 날을 맞이한 청년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영상 속사로 함께한다.
- 서울시 청년정책 참여자 2명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른 청년들에게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껏 꿈꾸며, 우리만의 길을 찾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언문을 낭독한다.
-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청년 아카펠라 그룹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 개정안 제22조의2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 청년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시행령의 규정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김 민 정
------	-------	-------	-------